

서울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8나2051707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김범식

피고, 항소인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희, 이원석

변론 종결 2019. 3. 21.

판결 선고 2019. 5. 2.

제 1 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6가합7153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4,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표 제6행 끝 부분에 ")")를 추가하고, 아래에서 제4행 '분석거로가'를 '분석결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표 제3행의 "배출구에어"를 "배출구에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의 "포함시키는"을 "포함시키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의 "이에 대하여" 앞에 "1)"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2, 13행의 "피고가 별도의 성능보증약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피고가 별도의 성능 유보금 지급보증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4, 5행의 "얹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 한다.

『[피고의 선급금 지급보증 약관 제1조는 보증책임에 관하여 '피고는 C이 이 사건공사계약과 관련한 선금의 반환채무(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함) 또는 원고에 대한 이행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계약이행보증 약관 제1조 역시 보증책임에 관하여 '피고는 C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인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각 보증서상 보증기간도 주계약의 공사기간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어, 보증기간 내에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두고 있지 않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이 2014. 4. 14.부터 2014. 7. 13.까지였다가 2014. 8. 13.까지로 연장되었고, 2014. 7. 13.까지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을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4. 7. 11. 원고에게 '공사기간을 2014. 8. 13.까지로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제5호증)을 보냈고, 원고가 작성한 '탈취설비 설치 및 운영경과' 문서(을 제10호증)에 "변경계약 공사기간: 2014. 4. 14. ~ 2015.2) 8. 1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2015. 10.경 피고에게 보증금 청구를 하면서 보낸 문서(을 제11호증)에 '공사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런데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은 2014. 7. 22. 원고에게 '현재 설치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귀사에서 공급할 1차측 용전, 용수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무부하 시운전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7월 말까지 1차측 용전, 용수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한 추가 공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서(갑 제24호증의 2)를 보냈고, ② C은 2015. 11. 2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잔금 76,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을 하면서 '원고가 집진기를 설치하는 문제 등으로 C이 시운전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추후 납기에 대한 책임 소재의 우려가 있어 계약기간 1개월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③ C은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중재신청 사건에서 제출한 2018. 1. 8.자 답변서(갑 제24호증의 1) 에서도 'C은 2014. 7. 10.까지 탈취설비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므로 바로 시운전을 하려고 했으나, 원고가 설치해야 할 집진기 등이 설치되지 않아 시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추후 납기에 대한 책임 소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C은 2014. 7. 11. 계약기간을 1개월 연장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나)항 기재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가)항 기재 사실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을 2014. 8. 13.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범균, 판사 김대현, 판사 주선아

- 1) 제1심판결의 제1항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 2) 이는 '2014.'의 오기로 보인다.